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1030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나42683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103056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박원환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소외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9.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1. 9. 9. 접수 제216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C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단위 : 원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
1	2013. 5.10.	315,000,000	2022. 4.29.	C은행	2013. 5.10.	350,000,000
2	2015.10.29.	765,000,000	2021.10.22.	중소기업은행	2015.10.29.	850,000,000
3	2016. 3.15.	255,000,000	2022. 3.11.	중소기업은행	2016. 3.15.	300,000,000
4	2016. 3.15.	510,000,000	2022. 3.11.	중소기업은행	2016. 3.15.	600,000,000

2) 소외 회사는 원고가 위 각 보증계약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기초로 C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표의 기재와 같은 자금을 대출받았다.

3) 소외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의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부터 현재까지 연 8%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6,616,466원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소외 회사는 2021. 10. 29.경부터 C은행에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C은행은 2021. 11. 30.경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보증사고의 내용으로 '발생일자 2021. 10. 29.', '사고원인 :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기업체현황으로 '대출금이자 연체 및 대표이사 연락두절'이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원고는 2022. 3. 15. C은행에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58,764,358원을, 2022. 3. 2.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4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442,486,157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소외 회사는 2021. 9. 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는 물품대금의 지급 명목으로 피고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자 피고로부터 계속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할 목적에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별지2. 재산내역의 기재와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 합계액이 4,438,285,589원, 소극재산 합계액이 15,109,775,16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강관 및 철재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3. 25.경부터 배관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외 회사에게 매년 수익 내지 10억 원이 넘는 배관 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2)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21. 3. 17.경 액면금 110,000,000원, 2021. 4. 19.경 액면금 180,000,000원, 2021. 5. 18.경 액면금 150,000,000원 등 액면금 합계 44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배서교부하였고, 2021. 6.말경 현재 위 각 어음금이 공제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의 합계는 453,639,163원이다.

(3) 그런데,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피고에게 배서·교부하였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발행업체인 소외 E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거절이 예상되자,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21. 6.경 위 각 약속어음금의 변제 및 추가 물품거래를 위한 합의(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 자재 납품 후 수령한 타수어음(E, 총합계 440,000,000원) 변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약속어음 만기일자	금액	변제일	변제금액(원)
2021.7.16.	110,000,000	7. 16.	55,000,000
		8. 19.	55,000,000
2021.8.19.	180,000,000	9. 18.	90,000,000
		10. 20.	90,000,000
2021.9.18.	150,000,000	11. 20.	75,000,000
		12. 20.	75,000,000

- 미수금액은 부도건 정리 후 2022. 12. 30.일까지 분할 정리하도록 한다.
- 제품 공급은 공급가 기준 월 소외 회사 2억에 거래하며, 총 여신은 5억 한도 내로 한다.
결제는 익월 10일까지 현금 또는 타수어음으로 지급한다.
- 제품 공급이 재고수불로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호협의 조치한다.
- 소외 회사로 2021년 7월 이후 납품한 자재 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입보한다
- 연대보증인 : F (서명)
- 2021년 7월 이후 납품한 자재 대금에 대해 지급기일 내 미지급시 직불처리에 동의한다.
- 워칭연체 (기재 생략)

약속어음 만기일자	금액	변제일	변제금액(원)
2021.7.16.	110,000,000	7. 16.	55,000,000
		8. 19.	55,000,000
2021.8.19.	180,000,000	9. 18.	90,000,000
		10. 20.	90,000,000
2021.9.18.	150,000,000	11. 20.	75,000,000
		12. 20.	75,000,000

(4)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2021. 9.경까지 소외 회사에 물품 공급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21. 8.경까지 합계 110,000,000원(= 2021. 7. 16. 55,000,000원 + 같은 해 8. 19. 15,000,000원 + 같은 해 8. 25. 40,000,000원)만을 지급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변제일정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21. 9.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위 매매대금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70,000,000원을 공제한 30,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21.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변제금으로 4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5)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은 2021년 7월분 235,438,875원, 2021년 8월분 158,930,282원, 2021년 9월분 63,301,275원 합계 457,670,432원에 이르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21. 9. 6. 발주한 합계 34,787,895원 상당의 자재를 같은 해 9. 16.에, 2021. 9. 7. 발주한 2,402,668원 상당의 자재를 같은 해 9. 17.에 각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소외 회사와 피고가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 잔액이 대체로 500,000,000원 안팎에서 관리되어 왔는데,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에게 배서교부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그 외상대금채무 잔액이 약 900,000,000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러한 상황에서 소외 회사는 사업 계속을 위한 전제로서 피고로부터 자재 등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물품대금의 변제, 추가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제공, 외상대금채무의 한도설정 등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부 외상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실제 이 사건 합의 내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자재 등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아 자신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21. 9. 7.경 소외 회사와 사이의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 발주받은 합계 40,887,619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자재를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1. 9. 17.까지 소외 회사에 공급하였던 사실,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추가로 물품대금채무 4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피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기존 거래관계를 중단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④이 사건 합의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 453,639,163원에 지급거절이 예상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440,000,000원을 합하면 실질 외상대금채무가 893,639,163원에 이르렀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소외 회사에 합계 457,870,432원 상당의 자재 등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였는데,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써 변제받은 물품대금 30,000,000원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변제금 전체(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68,429,210원으로 확인된다)를 감안하더라도 2021. 9. 30. 현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의 합계가 1,083,880,385원으로 증가하여 피고가 추가적으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소외 회사에 납품한 자재 등의 가액(40,887,619원)만으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가 변제받은 물품대금(30,000,000원)을 상회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앞서 본 이 사건 합의 내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와 내용, 이를 전후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 내지 변제내역 등의 거래관계를 참작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가 피고와 사이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 계속을 위한 최선의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당하게 염가로 체결되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피고와 통모하였다고 의심할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곧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별지